

<p>(議事棒 3打)</p> <p>.....</p> <p>(參 照)</p> <p>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동의안</p> <p>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에 의거 동의한다.</p> <p>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</p> <p>제 1 조(목적)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칙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자치복권 발행을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과 그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 2 조(협의회의 명칭) 협의회는 전국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라고 한다.</p> <p>제 3 조(사무소의 위치) 협의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34의 2번지 소재 사단법인 한국지방행정공제회(이하 “공제회”라 한다)에 둔다.</p> <p>제 4 조(구성)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로 구성한다.</p> <p>제 5 조(조직) ①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, 임원으로 회장 1인, 부회장 1인 및 감사 1인을 두되, 회장 및 부회장은 각각 위원중에서 호선하고, 감사는 회장과 부회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.</p> <p>②회장,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임기중에 위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후임자가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승계한다.</p> <p>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④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</p>	<p>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⑤감사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계처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공제회에 위탁한 사무의 처리상황을 감사한다.</p> <p>⑥협의회와 실무협의회 회계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직원을 둔다.</p> <p>제 6 조(실무협의회)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담당관 또는 투자관리담당관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한다.</p> <p>②실무협의회 위원은(이하 “실무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담당관 또는 투자관리담당관으로 한다.</p> <p>③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</p> <p>제 7 조(기능)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·결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복권발행관련사무의 대행기관선정 및 위탁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2. 전국자치복권 판매수익금의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간 배분등에 관한 사항 3. 복권의 판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. 기타 전국자치복권 발행 및 사무관리등에 필요한 사항 <p>②협의회는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 1항 각호의 사항을 실무협의회에 위임하거나,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공제회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.</p> <p>제 8 조(회의)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</p> <p>②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고,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.</p> <p>③실무협의회는 회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실무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.</p> <p>④내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.</p>
--	--

<p>⑤회장은 협의회 개최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를 내무부장관에게, 실무위원장은 협의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견과 협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9조(협의방법등) ①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합의는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구성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②감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다만,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.</p> <p>제10조(미합의사항 조정등) ①협의회에서 2회 이상 협의하여도 협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협의의 조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②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제11조(수익금의 관리운영 및 배분) ①전국자치복권 판매수익금의 관리운영과 지방자치단체별 배분은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수익금을 배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권판매액, 시군구수, 인구수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</p> <p>③행사기념복권을 당해행사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발행하는 경우의 판매수익금의 배분은 발행관련 지방자치단체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</p> <p>제12조(사무처리등) ①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, 관계공무원의 참석 및 의견개진을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</p>	<p>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 <p>제13조(재무회계등) ①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.</p> <p>②회장은 회계사무처리와 전국자치복권발행 사무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로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참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 <p>④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계사무처리상황은 매년 첫번째 회의시 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제14조(규약 개정) 이 규약의 개정은 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발의와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</p> <p>제15조(보칙) 이 규약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협의회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</p> <p>.....</p> <p>○議長 白昌鉉 다음은 議事日程 第14項 '95 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에 贊成하시는 議員님 起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原案에 贊成하시는 議員입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起立 表決)</p> <p>着席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反對하시는 議員님 起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起立 表決)</p> <p>앉아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表決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/p> <p>在席議員 74名 中 贊成 54名, 反對 6名, 棄權 14名으로, 議事日程 第14項 '95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은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</p>
--	--